

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 
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추가 적인 비용발생이 없다고 볼 수 있음

4. 작성자

교육문화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